

2026년 6월 27일 임시총회

우분투한국커뮤니티 정관 개정안

- 제6조, 제7조: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정회원으로 인하여 총회 등 각급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, 커뮤니티의 각종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
- 제11조: 운영위원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선출 지연시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
- 제25조: 준예산 제도 도입으로, 매년 1-3월 예산이 없어 자금 집행 불가한 상황 방지 목적
- 부칙: 시행일과 제7조 소급적용 등 명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... | 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... ④ 회원은 각급 회의에서 의결권이 있는 경우,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각급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. <신설> |
| 제7조 (회원의 탈퇴와 징계 및 제명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| 제7조 (회원의 탈퇴와 징계 및 제명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3. 1년 이상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판단되는 정회원의 경우, 3회 이상 연락 시도를 하였음에도 연락이 불가하면 준회원으로 전환 조치할 수 있다. <신설> |
| 제11조 (임원의 임기) ... | 제11조 (임원의 임기) ...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 <신설> |
| 제24조 (회계연도 및 보고) <생략> | 제24조 (회계연도 및 보고) <생략> ③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 <신설> ④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비용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 <신설> ● 단체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 인건비와 관리비 ● 법령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● 이미 승인된 계속 사업의 집행 경비 |

| | |
|--|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약 전년도 예산에 없는 비목을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경우,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며, 이후 1개월 이내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| | <p>부 칙</p> <p>① 이 정관은 2026년 6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이 정관의 제7조 제2항 제3호는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이미 1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회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이 경우 전환 조치는 본 규정 시행 이전 7개월 부터 3회 이상의 연락 시도를 하였음에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 |